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16
----------	-------

발의연월일 : 2025. 6. 23.

발 의 자 : 서삼석 · 이개호 · 김원이
이병진 · 문금주 · 조계원
박지원 · 김동아 · 박수현
위성곤 · 주철현 · 조인철
김영배 · 서미화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지역 주민은 택배 등의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 배송비에 더해 물류서비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배송이 지연 및 지체되는 등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물류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한국소비자원의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2020.12.)에 따르면 전남 신안 등 도서지역 주민이 생활물류에 대한 배송을 받는 경우 내륙 지역에 비해 평균 5배의 배송비를 더 지불하고 있는 상황임.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2023년부터 섬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섬 주민들에게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섬 지역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불평등 해소를 위해 섬 지역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도서지역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등 증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과 도서지역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도서지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 이용에 드는 요금 및 「우편법」 제1조의2에 따른 우편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요금의 구체적인 범위 및 지원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5조의4(도서지역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등 증진 지원) ①</u>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과 도서지역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도서지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 이용에 드는 요금 및 「우편법」 제1조의2에 따른 우편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요금의 구체적인 범위 및 지원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